

#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	관련
번호	1674

발의년월일 : 2020년 12월 17일

제안자 : 보건복지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되, 상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맞춰 일부 수정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'이의신청'을 '이의제기'로 수정함.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부과·징수 및 이의신청”를 “부과·징수 및 이의제기”로 한다.

#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## 신·구 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제10조(과태료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<u>부과·징수</u> 절차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</p>	<p>제10조(과태료 <u>부과·징수</u> 등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 <u>부과·징수</u> 및 <u>이의신청</u>----- -----.</p>	<p>제10조(과태료 <u>부과·징수</u> 등)</p> <p>①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 <u>부과·징수</u> 및 <u>이의제기</u>----- -----.</p>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 제목 “(과태료)”를 “(과태료 부과·징수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부과·징수”를 “부과·징수 및 이의제기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 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수   정   안
<p>제10조(<u>과태료</u>)</p> <p>① (생   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<u>부과</u> · <u>징수</u> 절차는 「질서위반행위 규제법」에 따른다.</p>	<p>제10조(<u>과태료 부과·징수 등</u>)</p> <p>①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부과</u> · <u>징수 및 이의제기</u>----- -----.</p>